

서울특별시 건축·주택종합정보시스템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의안 번호	2853
----------	------

2021. 12. 17.
도시계획관리위원회

I.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1. 10. 15. 전석기의원
- 회부일자 : 2021. 10. 20.
-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03회 정례회 제7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2021.12.17. 상정·의결)

II. 제안설명의 요지(김경 의원)

1. 제안이유

- 서울시만의 고유한 건축·주택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해 건축·주택과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 등의 책무 및 건축·주택종합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 1)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은 법령상 건축·주택관련 정보를 종합 관리하고, 건축·주택정보의 수집, 처리 및 관리 등을 통해 적절한 주택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기 위해 건축·주택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해야함을 명시함(안 제3조 및 제4조).
- 2) 건축·주택종합정보시스템 운영 조직의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나. 건축·주택정보처리 기본계획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

- 1) 시장은 5년마다 건축·주택정보처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건축·주택정보처리 기본계획의 실현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함을 규정함(안 제6조).

Ⅲ. 검토보고의 요지(조정래 수석전문위원)

- 제정조례안은 건축 및 주택에 관한 정보는 개별 법령상(건축법, 주택법 등) 정보의 종합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어 건축·주택정보의 종합적, 세부적인 취합과 관리가 되지 않아 서울시만의 고유한 건축·주택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해 건축·주택과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 현재 건축·주택 데이터는 인·허가 과정에서의 자료 수집 및 보관 기능 위주로 생산 및 관리되고 있어 정책수립을 위한 분석 자료로 활용하기에는 미흡한 상황으로, 서울시의 경우 전국적인 건축·주택 정책의 모델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주택정보의 종합적, 세부적인 취합과 관리가 되지 않아 정책수립이 제한되고 있으며, 급격하게 변화하는 주택시장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¹⁾.
- “건축·주택 종합정보시스템”은 “신뢰도 높은 건축주택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책 실효성 확보 및 서민주거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한 추진전략으로 1)맞춤형 종합정보 서비스 제공, 2)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건축주택정책역량 제고, 3)지능형 서울건축주택종합정보시스템 구축과, 4)유연하고 확장 가능한 구조 설계를 설정하였음(검토보고서 붙임-2 참고).
- 시스템의 목표모델로 주택수급 정책 지원 서비스와 건축주택 안전 및 에너지 정보 서비스, 생애주기 기반 데이터 관리, 및 에너지/안전 및 공간정보의 관리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포함하고 있음.



1) 현행 건축물정보는 생성 이후 갱신이 안 되어 누락 및 오기 항목이 다수며 정책여건 변화에 따라 관리항목은 추가하지만 기존 건축물의 추가정보는 부재하고, 주택공급 및 정비사업에 대한 주거 공급 및 수요 예측을 위한 데이터와 건축물의 안전관리·에너지 데이터 또한 부재하다고 함.

- 이에 이번 조례제정은 건축 및 주택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이고 세 부적으로 취합하며 관리하기 위한 서울 건축·주택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것으로 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에 따라 시민 밀착형 주택정책을 위한 기초 데이터 제공 및 분석을 가능케 할 것으로 기대됨.

〈조례제정안 주요 내용〉

- ▶ 건축·주택정보처리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 건축주택종합정보시스템 운영 조직 임무 (안 제7조)
- ▶ 건축·주택종합정보시스템 관련 협조와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8·9조)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국가정보기본법”)과 이에 따른 「제6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을 살펴보면,
 - ① 최신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명확한 공간정보 제공, ② 공간정보의 활용도 극대화 및 확장 가능성을 고려한 표준화 및 정보 호환성 제고, ③ 중복투자의 최소화, ④ 공개 등을 통한 정보 접근성 제고²⁾³⁾를 운

2)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8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 ①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생산 또는 관리하는 공간정보가 다른 기관이 생산 또는 관리하는 공간정보와 호환이 가능하도록 제21조에 따른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 또는 기술기준에 따라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관리하여야 한다.
- ②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가 최신 정보를 기반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9조(중복투자의 방지)

- ① 관리기관의 장은 새로운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에 구축된 공간정보체계와 중복투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구축하고자 하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가 해당 기관 또는 다른 관리기관에 이미 구축되었는지 여부
 2. 해당 기관 또는 다른 관리기관에 이미 구축된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활용 가능 여부
- ② 관리기관의 장이 새로운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이 공공기관일 경우는 통보 전에 주무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이 중복

영원칙으로 함. 이에 기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 검토하고자 함.

“건축·주택정보처리 기본계획” (안 제6조)

- 시장은 5년마다 건축·주택정보처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시스템 개발과 발전에 대한 기본목표에 대한 사항보다 제도·정책·위탁 운영에 대한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과 방향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이와 같은 5개년 계획의 취지는 건축·주택정보처리에 대한 기본적인 목표와 방향만 재설정하는 차원이 아닌 시스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것이므로, 매년 타당성을 포함한 종합적인 분석과 앞서 검토된 시스템 보급 및 활용 촉진을 위한 표준화 및 정보 호환성 제고 방안, 공개 등을 통한 접근성 제고 방안, 기존 공간정보와의 연계를 통한 중복투자의 최소화 방안, 그 외 건축·주택 정보의 활용 및 정책 연계 방안, 시스템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항, 그리고 그 밖에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괄할 필요가 있어 보임.

투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중복투자 여부의 판단에 필요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3)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조(국민의 공간정보복지 증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공간정보에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공간정보를 생산 및 관리하고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공간정보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민은 법령에 따라 공개 및 이용이 제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리기관이 생산한 공간정보를 정당한 절차를 거쳐 활용할 권리를 가진다.

- 또한, 기본계획의 실현을 위해 매년 시스템의 타당성 검토를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제 정 안	수 정 안
<p>제6조(건축·주택정보처리 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u>시장은 5년마다 건축·주택정보처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건축·주택정보처리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u></p> <p>1. <u>건축·주택정보처리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u> 2. <u>건축·주택정보처리와 관련된 제도 및 법령의 개선</u> 3. <u>건축·주택정보처리를 통한 정책수립의 방향</u> 4. <u>건축·주택정보처리를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u> 5. <u>건축·주택정보처리를 위한 전문 기관에의 위탁</u></p> <p>② 시장은 건축·주택정보처리 기본계획의 실현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p>	<p>제6조(건축·주택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① <u>시장은 시스템의 발전과 개선을 위해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u></p> <p>1. <u>시스템 운영의 목표와 추진방향</u> 2. <u>건축·주택 정보의 활용 및 정책 연계 방안</u> 3. <u>시스템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항</u> 4. <u>시스템의 보급 및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사항</u> 5. <u>시스템의 공간정보 접근성 제고와 관한 사항</u> 6. <u>시스템 사용자 교육에 관한 사항</u> 7. <u>그 밖에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p> <p>② 시장은 건축·주택 정보화 기본계획의 실현을 위해 시스템의 타당성 검토를 포함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p>

“시스템 운영조직과 임무” (안 제7조)

- 안 제7조는 건축·주택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조직과 임무를 정하며 건축·주택정보 수집 및 분석, 주택·부동산 시장 모니터링 및 동향 분석, 주택 매매 및 전월세 실거래가 분석, 시스템 운영관리, 유지 보수 사업관련을 포함하고 있음.

- 다만, 시스템 추진목표 및 과제에서 진단한 사항인 생애주기 기반

데이터 관리 등을 위해 건축물 및 주택의 공급·멸실량과 공공주택의 건설·공급량 분석 임무를 추가할 필요가 있음.

제 정 안	수 정 안
<p>제7조(건축·주택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 조직과 임무)</p> <p>① 시장은 건축·주택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담 조직과 인력을 둘 수 있다.</p> <p>② 전담 조직의 주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주택정보 정보 수집 및 분석 2. 주택·부동산 시장 모니터링 및 동향 분석 3. 주택 매매 및 전월세 실거래가 분석 4. 시스템 운영관리, 유지보수 사업관리 5. 그 밖에 건축·주택정책개발을 위해 필요한 업무 	<p>제7조(시스템 운영의 전담 조직 설치)</p> <p>① 시장은 건축·주택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담 조직과 인력을 둘 수 있다.</p> <p>② 전담 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주택 정보 수집 및 분석 2. 건축물 및 주택의 공급·멸실량 분석 3. 공공주택의 건설·공급량 분석 4. (제2호와 같음) 5. (제3호와 같음) 6. (제4호와 같음) 7. 그 밖에 건축·주택 정보 관리·분석과 관련된 업무

“정보 행정의 협조와 요청사항 및 관리 위탁사항”(안 제8조·제9조)

- 안 제8조는 정보 행정의 협조와 요청 사항을 담았는데, 구체적인 상위법이 없는 상태로 타 시스템의 정보를 협조 받아야 하는 상황 이므로, 별표(검토보고서 붙임-3)에 속한 유관 행정기관 등의 협조 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다만, 별표의 유관 시스템 목록 중 건축·주택종합정보시스템과 직 접 연관된 시스템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검토보고 서 붙임-3 참고).
- 안 제9조는 시스템에 대한 관리 위탁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주관

부서는 현재 서울시 내 시스템 운영을 위탁하는 사례가 존재하지 않고, 민간위탁은 단순행정 관리사무 등일 경우에 가능하므로, 건축·주택 정보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와 협력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임. 따라서 운영과 관련한 사항의 일부 수정이 필요함.

제 정 안	수 정 안
<p>제8조(정보 행정의 협조와 요청)</p> <p>① 건축 주택정보시스템 운영 조직은 제7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건축 주택정보를 수집, 처리 등을 하는 행정기관에 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p>	<p>제8조(시스템 구축 운영에의 협조) 제7조제1항의 전담 조직은 제3조의 시스템 구축 운영과 제7조제2항의 건축 주택 정보 관리 분석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별표에 해당하거나 이와 관련된 시스템을 운영하는 행정기관에 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p>
<p>제9조(건축 주택종합정보시스템 관리의 위탁) ① 시장은 건축 주택종합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각 목의 업무에 대하여 건축 주택정보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업무의 위탁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이 조례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p>	<p>제9조(전문기관과 협력사업 추진) 시장은 시스템의 전문적 운영 및 건축 주택 정책과의 효율적 연계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건축 주택 정보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연구기관 교육기관 관련협회) 등과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 **끝으로** 유관기관·부서간의 협력을 통하여 중복을 피하고,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시스템 업데이트 등이 한 업체에만 특화되어 독점운영이 되지 않도록 하고, 서울시의 선제적인 시스템이 타 시·도에도 통용되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표준화 및 확장 가능성을 고려한 시스템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출석위원 전원 찬성)

VII.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서울특별시 건축·주택종합정보시스템 운영 조례안 수정안

의안 번호	2853
----------	------

제안일자 : 2021. 12. 17.
제안자 : 도시계획관리위원장

1. 수정이유

- 건축·주택정보시스템 운영 및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시스템 운영 목적에 맞게 구체화하고 전담조직의 업무를 명확히 하며, 연계되는 정보시스템을 직접 관계되는 시스템으로 한정하는 등 내용을 조정함.

2. 수정 주요내용

- 건축·주택 정보 처리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구체화하고(안 제6조),
- 건축·주택종합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전담 조직의 업무를 보다 명확히 하며(안 제7조)
- 정보시스템 관리 위탁 근거를 삭제하는 대신, 시스템의 전문적 운영과 활용을 위하여 전문기관과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9조),
- 건축·주택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되는 정보시스템을 보다 현실성있게 조정함(안 별표).
- 그 외 자구 정리

서울특별시 건축·주택종합정보시스템 운영 조례안 수정안

서울특별시 건축·주택종합정보시스템 운영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 중 “건축·주택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건축·주택의 건설·공급·관리, 건축물 인허가 정보, 건축·주택 공급 정보, 공간 정보, 에너지정보”를 “건축·주택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건축물 및 주택의 건설·공급·관리, 건축물 인허가 정보, 건축물 에너지정보, 공간 및 지역 정보”로 한다.

안 제2조의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건축·주택정보”를 “건축·주택 정보”로, “호”를 “목”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건설 및 공급 등의 주택의 수요와 공급에 관련된 정보”를 “건설·공급 및 주택거래 가격과 관련된 정보”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인·허가와 관련된 정보”를 “인허가 정보”로 하고,

같은 호 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그 밖에 건축물 및 주택과 관련된 정보

안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건축·주택종합정보시스템”이란 건축·주택 정보와 별표에 규정된 각종 시스템상의 정보를 연계·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축·주택 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안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건축·주택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축·주택 정보를 수립·처리·관리하기 위하여 건축·주택종합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안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건축·주택 정보의 관리·활용을 통하여 건축물의 안전 및 생애주기 관리, 서민주거 안정 및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안 제5조 중 “건축·주택정보의“를 ”건축·주택 정보의”로 한다.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건축·주택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시스템의 발전과 개

선을 위해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시스템 운영의 목표와 추진방향
2. 건축·주택 정보의 활용 및 정책 연계 방안
3. 시스템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시스템의 보급 및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사항
5. 시스템의 공간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사항
6. 시스템 사용자 교육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건축·주택 정보화 기본계획의 실현을 위해 시스템의 타당성 검토를 포함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제7조(시스템 운영의 전담 조직 설치) ① 시장은 건축·주택 정보의 수집·분석과 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전담 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건축·주택 정보 수집 및 분석
2. 건축물 및 주택의 공급·멸실량 분석
3. 공공주택의 건설·공급량 분석
4. 주택·부동산 시장 모니터링 및 동향 분석
5. 주택 매매 및 전월세 실거래가 분석

6. 시스템 운영관리, 유지보수 사업관리

7. 그 밖에 건축·주택 정보 관리·분석과 관련된 업무

제8조(시스템 구축·운영에의 협조) 제7조제1항의 전담 조직은 제3조의 시스템 구축·운영과 제7조제2항의 건축·주택 정보 관리·분석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별표에 해당하거나 이와 관련된 시스템을 운영하는 행정기관에 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안 제9조의 제목을 “전문기관과 협력사업 추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시스템의 전문적 운영 및 건축·주택 정책과의 효율적 연계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건축·주택 정보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연구기관·교육기관·관련협회) 등과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안 제10조의 제목을 “건축·주택 정보의 활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서울특별시의 주택”을 “서울시 건축·주택”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건축·주택정보”를 “건축·주택 정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2호 중 “해당 령”을 “관계 법령”으로 한다.

안 제11조 제1항 중 “건축·주택정보 등”을 “건축·주택 정보 등”으로 한다.

안 “별표1”을 “[별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건축·주택 정보와 관련된 시스템(제2조제2호 관련)

연번	근거 법률	시스템의 명칭
1	「건축행정시스템 운영규정」 제2조제1호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2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제2조제3호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3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 제2조1호	한국감정원 K-apt정보시스템
4	「부동산거래정보 운영규정」 제2조제1항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5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조제1호	기존무허가관리시스템
6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빈집정보시스템
7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3조제10호	서울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8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서울 부동산정보광장
9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69조제1항	클린업시스템
10	「도시계획정보체계(UPIS)구축 및 운영 규정」 제3조제1호	도시계획정보시스템
11	「공공주택 특별법」 제51조제3항	서울주거포털
12	「주택법」 제88조	주택공급통계정보시스템(HIS)
1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0조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
14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및 제6조	항공사진서비스와 3차원 공간 정보시스템, 서울 통합공간정보시스템(SDW)
15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규정」 제4조제1항	서울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NSDI)
16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항공사진서비스
17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3차원 공간 정보시스템
18	「공간정보오픈플랫폼 운영규정」 제2조제1호	공간정보오픈 플랫폼(브이월드)
19	「국토지리정보원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3조제1호	국토정보플랫폼
20	「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65조	네트워크RTK 시스템
21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서울 공공성지도 시스템
22	「건축물관리법」 제7조제1항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
2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제1항	시설물정보종합 관리시스템(FMS)
24	「전기사업법」 제19조	한전 i-smart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건축·주택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건축·주택의 건설·공급·관리, 건축물 인허가 정보, 건축·주택 공급 정보, 공간 정보, 에너지정보</u> 등 「건축법」, 「건축물관리법」,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등에 규정된 건축·주택관련 정보의 종합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u>건축·주택정보</u>”란 건축물 및 주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p> <p>가. (생략)</p> <p>나. (생략)</p> <p>다. 「주택법」에 의한 주택의 <u>건설 및 공급 등의 주택의 수요와 공급에 관련된 정보</u></p> <p>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과 각종 <u>인·허가</u></p>	<p>제1조(목적) ----- <u>건축·주택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건축물 및 주택의 건설·공급·관리, 건축물 인허가 정보, 건축물 에너지정보, 공간 및 지역 정보</u>----- ----- ----- ----- ----- ----- ----- ----- ----- ----- -----</p> <p>제2조(정의) ----- ----- -----</p> <p>1. “<u>건축·주택 정보</u>”----- ----- <u>목</u>----- ----- -----</p> <p>가. (제정안과 같음)</p> <p>나. (제정안과 같음)</p> <p>다. ----- <u>건설·공급 및 주택거래 가격과 관련된 정보</u></p> <p>라. ----- ----- <u>인허가</u></p>

제 정 안	수 정 안
<p><u>와 관련된 정보</u></p> <p>마. (생략)</p> <p>바. <u>그밖에 건축·주택정보를 다루는 정보를 말한다.</u></p> <p>2. <u>“건축·주택종합정보시스템”이란 건축·주택정보와 별표1에 규정된 각종 시스템상의 정보를 통합하여 건축·주택 정책을 지원하는 활용 체계를 말한다.</u></p> <p><u>제3조(건축·주택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u>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은 <u>건축·주택정보를 수집·처리 및 관리를 위해 건축·주택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u></p> <p><u>제4조(시장의 책무)</u> 시장은 <u>건축·주택정보의 종합·관리를 통하여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생애 동안 관리하며, 주택시장의 안정적인 관리 및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u></p> <p><u>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u> <u>건축·주택정보의 수집, 처리 및 관리 등</u></p>	<p><u>정보</u></p> <p>마. (제정안과 같음)</p> <p>바. <u>그 밖에 건축물 및 주택과 관련된 정보</u></p> <p>2. <u>“건축·주택종합정보시스템”이란 건축·주택 정보와 별표에 규정된 각종 시스템상의 정보를 연계·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축·주택 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한다.</u></p> <p><u>제3조(건축·주택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u>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u>건축·주택 정보를 수립·처리·관리하기 위하여 건축·주택종합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u></p> <p><u>제4조(시장의 책무)</u> 시장은 <u>건축·주택 정보의 관리·활용을 통하여 건축물의 안전 및 생애주기 관리, 서민주거 안정 및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u></p> <p><u>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u> <u>건축·주택 정보의 -----</u></p>

제 정 안	수 정 안
<p>에 관하여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 ----- -----.</p>
<p><u>제6조(건축·주택정보처리 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시장은 5년마다 건축·주택정보처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건축·주택정보처리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건축·주택정보처리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u> <u>2. 건축·주택정보처리와 관련된 제도 및 법령의 개선</u> <u>3. 건축·주택정보처리를 통한 정책수립의 방향</u> <u>4. 건축·주택정보처리를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u> <u>5. 건축·주택정보처리를 위한 전문기관에의 위탁</u> <p><u>② 시장은 건축·주택정보처리 기본계</u></p>	<p><u>제6조(건축·주택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시스템의 발전과 개선을 위해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시스템 운영의 목표와 추진방향</u> <u>2. 건축·주택 정보의 활용 및 정책연계 방안</u> <u>3. 시스템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항</u> <u>4. 시스템의 보급 및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사항</u> <u>5. 시스템의 공간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사항</u> <u>6. 시스템 사용자 교육에 관한 사항</u> <u>7. 그 밖에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 <p><u>② 시장은 건축·주택 정보화 기본계획</u></p>

제 정 안	수 정 안
<p><u>획의 실현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u></p>	<p><u>의 실현을 위해 시스템의 타당성 검토를 포함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u></p>
<p><u>제7조(건축·주택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 조직과 임무)</u></p>	<p><u>제7조(시스템 운영의 전담 조직 설치)</u></p>
<p><u>① 시장은 건축·주택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담 조직과 인력을 둘 수 있다.</u></p>	<p><u>① 시장은 건축·주택 정보의 수집·분석과 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u></p>
<p><u>② 전담 조직의 주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u></p>	<p><u>② 전담 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건축·주택정보 정보 수집 및 분석</u> <u>2. 주택·부동산 시장 모니터링 및 동향 분석</u> <u>3. 주택 매매 및 전월세 실거래가 분석</u> <u>4. 시스템 운영관리, 유지보수 사업 관리</u> <u>5. 그밖에 건축·주택정책개발을 위해 필요한 업무</u>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건축·주택 정보 수집 및 분석</u> <u>2. 건축물 및 주택의 공급·멸실량 분석</u> <u>3. 공공주택의 건설·공급량 분석</u> <u>4. 주택·부동산 시장 모니터링 및 동향 분석</u> <u>5. 주택 매매 및 전월세 실거래가 분석</u> <u>6. 시스템 운영관리, 유지보수 사업 관리</u> <u>7. 그 밖에 건축·주택 정보 관리·분</u>

제 정 안	수 정 안
<p><u>제8조(정보 행정의 협조와 요청)</u></p> <p>① <u>건축·주택정보시스템 운영 조직은 제7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건축·주택정보를 수집, 처리 등을 하는 행정기관에 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u></p> <p><u>제9조(건축·주택종합정보시스템 관리의 위탁)</u> ① <u>시장은 건축·주택 종합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각 목의 업무에 대하여 건축·주택정보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업무의 위탁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이 조례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u></p> <p>1. (생략)</p> <p>2. (생략)</p> <p>4. (생략)</p> <p><u>제10조(건축·주택정보의 활용)</u></p>	<p><u>석과 관련된 업무</u></p> <p><u>제8조(시스템 구축·운영에의 협조)</u></p> <p><u>제7조제1항의 전담 조직은 제3조의 시스템 구축·운영과 제7조제2항의 건축·주택 정보 관리·분석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별표에 해당하거나 이와 관련된 시스템을 운영하는 행정기관에 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u></p> <p><u>제9조(전문기관과 협력사업 추진)</u></p> <p><u>시장은 시스템의 전문적 운영 및 건축·주택 정책과의 효율적 연계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건축·주택 정보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연구기관·교육기관·관련협회) 등과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u></p> <p>1. (제정안과 같음)</p> <p>2. (제정안과 같음)</p> <p>3. (제정안과 같음)</p> <p><u>제10조(건축·주택 정보의 활용)</u></p>

제 정 안	수 정 안
<p>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u>건축·주택종합정보시스템</u>을 활용하여 생성되는 자료를 <u>서울특별시의 주택</u> 및 부동산 정책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외하고 시민에게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u>건축·주택정보</u>에 제1호 및 제2호의 정보가 포함된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정보를 분리할 수 있는 경우는 그 사항을 분리·제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p> <p>1. (생략)</p> <p>2.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u>해당 령</u>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p> <p>③ <u>건축·주택정보</u>의 시민제공을 위한 방법, 관리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8조를 준용한다.</p>	<p>① <u>시</u> <u>스텝</u> <u>서울시 건축·주택</u></p> <p>② <u>건축·주택 정보</u></p> <p>1. (제정안과 같음)</p> <p>2. <u>관계 법령</u></p> <p>③ <u>건축·주택 정보</u></p>
제11조(교육 및 전문 인력 양성)	제11조(교육 및 전문 인력 양성)

제 정 안

① 시장은 공무원의 데이터 역량 강화를 위하여 건축·주택정보 등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필요하다 인정되는 경우 교육기관에 교육과정의 개설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생략>

별표 1. 건축·주택종합정보와 관련된 시스템

- 1) 「건축행정시스템 운영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 2)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제2조제3호에 관련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 3)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 제2조1호에 관련된 한국감정원 K-apt정보시스템
- 4) 「부동산거래정보 운영규정」 제2조제1항에 관련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5)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조제1호에 관련된 기존무허가관리시스템
- 6)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관련된 빈집정보시스템
- 7)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3조제10호에 관련된 서울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 8)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관련된 서울 부동산정보광장
- 9)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69조제1항에 관련된 클린업시스템
- 10) 「도시계획정보체계(UPIS)구축 및 운영 규정」 제3조제1호에 관련된 도시계획정보시스템
- 11) 「공공주택 특별법」 제51조제3항에 관련된 서울주거포털
- 12) 「주택법」 제88조에 관련된 주택공급통계정보시스템(HIS)
- 13)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정보통신망과 정보통신서비스에 관련된 공공 wifi 정보시스템
- 1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0조에 관련된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
- 15) 「공공주택 특별법」 제51조제3항에 관련된 SH, LH

수 정 안

① -----
----- 건축·주택 정보 등 -----

② <제정안과 같음>

③ <제정안과 같음>

[별표] 건축·주택 정보와 관련된 시스템(제2조제2호 관련)

연번	근거 법률	시스템의 명칭
1	「건축행정시스템 운영규정」 제2조제1호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2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제2조제3호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3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 제2조1호	한국감정원 K-apt정보시스템
4	「부동산거래정보 운영규정」 제2조제1항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5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조제1호	기존무허가관리시스템
6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빈집정보시스템
7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3조제10호	서울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8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서울 부동산정보광장
9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69조제1항	클린업시스템
10	「도시계획정보체계(UPIS)구축 및 운영 규정」 제3조제1호	도시계획정보시스템
11	「공공주택 특별법」 제51조제3항	서울주거포털
12	「주택법」 제88조	주택공급통계정보시스템(HIS)
1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0조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
14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및 제6조	항공사진서비스와 3차원 공간 정보시스템, 서울 통합공간정보시스템(SDW)
15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규정」 제4조제1항	서울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NSDD)
16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항공사진서비스
17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3차원 공간 정보시스템
18	「공간정보오픈플랫폼 운영규정」 제2조제1호	공간정보오픈 플랫폼(브이월드)
19	「국토지리정보원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 규정」 제3조제1호	국토정보플랫폼
20	「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65조	네트워킹RTK 시스템
21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서울 공공성지도 시스템
22	「건축물관리법」 제7조제1항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
2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제1항	시설물정보종합 관리시스템(FMS)
24	「전기사업법」 제19조	한전 i-smart

제 정 안	수 정 안
<p>인터넷청약시스템</p> <p>16) 「공공주택 특별법」 제51조제1항에 관련된 국토부(전국) My Home 포털</p> <p>17)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제13조에 관련된 주민등록시스템</p> <p>18) 「등기정보시스템운영·보안및관리에관한예규」 제3조제1호에 관련된 등기정보시스템</p> <p>19)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규정」 제2조에 관련된 서울 세무종합시스템</p> <p>20)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관련된 서울 통합공간정보시스템(SDW)</p> <p>21)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규정」 제4조제1항에 관련된 서울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NSDI)</p> <p>22) 「건축행정시스템 운영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p> <p>23) 「도로명주소정보체계 운영규정」 제10조제1항에 관련된 서울 도로명주소시스템</p> <p>24)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제2조제3호에 관련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p> <p>25)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관련된 항공사진서비스</p> <p>26)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관련된 3차원 공간 정보시스템</p> <p>27) 「공간정보오픈플랫폼 운영규정」 제2조제1호에 관련된 공간정보오픈 플랫폼(브이월드)</p> <p>28) 「국토지리정보원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3조제1호에 관련된 국토정보플랫폼</p> <p>29) 「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65조에 관련된 네트워크 RTK 시스템</p> <p>30)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관련된 서울 공공성지도 시스템</p> <p>31) 「건축물관리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p> <p>32) 「소방기본법」 제2조의2에 관련된 국민안전처 소방민원시스템</p> <p>33) 「건축행정시스템 운영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p> <p>3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관련된 한국가스안전공사 내부시스템</p> <p>35)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2조에 관련된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내부시스템</p> <p>36) 「전자정부법」 제12조제1항에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서울행정정보시스템</p> <p>37) 「전기사업법」 제19조제1항에 관련된 한국전기안전공사 내부시스템</p> <p>3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관련된 소방안전지도</p>	

제 정 안	수 정 안
<p>39)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5조 제1항에 관련된 시설물정보종합 관리시스템(FMS)</p> <p>40) 「소방업무정보화 표준에 관한 규정」 제3조에 관련된 119행정정보시스템</p> <p>4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4조의2에 관련된 국민 재난안전포털</p> <p>4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5조 제3항에 관련된 법인시설관리시스템</p> <p>4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 관련된 지하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p> <p>44)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36조에 재난방송과 관련된 서울안전앱</p> <p>45)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에 관련된 건물에너지통합관리시스템</p> <p>46) 「건축행정시스템 운영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 행정시스템(세움터)</p> <p>47)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및 관련 협회에서 운영하는 에너지 정보</p> <p>48)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운영하는 에너지 정보</p> <p>49) 「한국전력공사법」 제1조에 따른 한국전력공사에서 운영하는 에너지 정보</p> <p>50)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관련된 건물에너지효율화(BRP) 기금관리 시스템</p> <p>5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1조에 관련된 서울시 에너지소비총량제 평가 시스템</p> <p>52)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4조에 관련된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시스템</p> <p>53) 「국가 온실가스 통계의 총괄관리에 관한 규정」 제1조에 관련된 국가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p> <p>54) 「에너지통계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호에 관련된 국가 에너지통계 종합정보시스템</p> <p>55) 「전기사업법」 제19조에 관련된 한전 i-smart</p>	

서울특별시 건축·주택종합정보시스템 운영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주택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건축물 및 주택의 건설·공급·관리, 건축물 인허가 정보, 건축물 에너지정보, 공간 및 지역 정보 등 「건축법」, 「건축물관리법」,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등에 규정된 건축·주택관련 정보의 종합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축·주택 정보"란 건축물 및 주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 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인허가에 관련된 정보
 - 나. 「건축물관리법」에 의한 건축물의 유지 및 관리, 건축물생애이력에 관련된 정보
 - 다. 「주택법」에 의한 주택의 건설·공급 및 주택거래 가격과 관련된 정보
 - 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과 각종 인허가 정보
 - 마.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의한 공간 정보와 관련된 정보
 - 바. 그 밖에 건축물 및 주택과 관련된 정보
2. "건축·주택종합정보시스템"이란 건축·주택 정보와 별표에 규정된 각종 시스템상의 정보를 연계·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축·주택 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건축·주택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축·주택 정보를 수립·처리·관리하기 위하여 건축·주택종합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건축·주택 정보의 관리·활용을 통하여 건축물의 안전 및 생애주기 관리, 서민주거 안정 및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건축·주택 정보의 수집, 처리 및 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건축·주택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시스템의 발전과 개선을 위해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시스템 운영의 목표와 추진방향
2. 건축·주택 정보의 활용 및 정책 연계 방안
3. 시스템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시스템의 보급 및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사항
5. 시스템의 공간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사항
6. 시스템 사용자 교육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건축·주택 정보화 기본계획의 실현을 위해 시스템의 타당성 검토를 포함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제2장 서울특별시 건축·주택종합정보시스템 운영

제7조(시스템 운영의 전담 조직 설치) ① 시장은 건축·주택 정보의 수집·분석과 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전담 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건축·주택 정보 수집 및 분석
2. 건축물 및 주택의 공급·멸실량 분석
3. 공공주택의 건설·공급량 분석
4. 주택·부동산 시장 모니터링 및 동향 분석
5. 주택 매매 및 전월세 실거래가 분석
6. 시스템 운영관리, 유지보수 사업관리
7. 그 밖에 건축·주택 정보 관리·분석과 관련된 업무

제8조(시스템 구축·운영에의 협조) 제7조제1항의 전담 조직은 제3조의 시스템 구축·운영과 제7조제2항의 건축·주택 정보 관리·분석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별표에 해당하거나 이와 관련된 시스템을 운영하는 행정기관에 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전문기관과 협력사업 추진) 시장은 시스템의 전문적 운영 및 건축·주택 정책과의 효율적 연계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건축·주택 정보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연구기관·교육기관·관련협회) 등과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택 빅데이터 기반 시스템 전략수립 및 분석, 교육 등
2. 데이터 과학 및 시스템 운영을 위한 인공지능, 기계학습 기법 등을 활용한

주택시장 모니터링 및 관리

3. 그 밖에 건축·주택 정책 개발을 위해 필요한 업무

제10조(건축·주택 정보의 활용)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시스템을 활용하여 생성되는 자료를 서울시 건축·주택 및 부동산 정책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외하고 시민에게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건축·주택 정보에 제1호 및 제2호의 정보가 포함된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정보를 분리할 수 있는 경우는 그 사항을 분리·제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2.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

③ 건축·주택 정보의 시민제공을 위한 방법, 관리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8조를 준용한다.

제11조(교육 및 전문 인력 양성) ① 시장은 공무원의 데이터 역량 강화를 위하여 건축·주택 정보 등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육기관에 교육과정의 개설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건축·주택정보의 교육과 전문 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건축·주택정보의 교육과 전문 인력 양성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연구기관·교육기관·관련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건축·주택 정보와 관련된 시스템(제2조제2호 관련)

연번	근거 법률	시스템의 명칭
1	「건축행정시스템 운영규정」 제2조제1호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2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제2조제3호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3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 제2조1호	한국감정원 K-apr정보시스템
4	「부동산거래정보 운영규정」 제2조제1항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5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조제1호	기존무허가관리시스템
6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빈집정보시스템
7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3조제10호	서울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8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서울 부동산정보광장
9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69조제1항	클린업시스템
10	「도시계획정보체계(UPIS)구축 및 운영 규정」 제3조제1호	도시계획정보시스템
11	「공공주택 특별법」 제51조제3항	서울주거포털
12	「주택법」 제88조	주택공급통계정보시스템(HIS)
1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0조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
14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및 제6조	항공사진서비스와 3차원 공간 정보시스템, 서울 통합공간정보시스템(SDW)
15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규정」 제4조제1항	서울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NSDI)
16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항공사진서비스
17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3차원 공간 정보시스템
18	「공간정보오픈플랫폼 운영규정」 제2조제1호	공간정보오픈 플랫폼(브이월드)
19	「국토지리정보원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3조제1호	국토정보플랫폼
20	「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65조	네트워크RTK 시스템
21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서울 공공성지도 시스템
22	「건축물관리법」 제7조제1항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
2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제1항	시설물정보종합 관리시스템(FMS)
24	「전기사업법」 제19조	한전 i-smart